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10.10.14 ( 목 14:00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**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**

**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(찬성자 6인)**

**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**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9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**3. 제안 이유**

-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복지향상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**4. 주요내용**

- 가.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13조 등)

**5. 검토의견**

- ‘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운용 중인 조례안의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, 근거 법령인 상위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